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284

발의연월일: 2022. 11. 16.

발 의 자: 구자근 · 김도읍 · 김선교

김예지 · 김학용 · 박성민

서범수 · 이종배 · 임병헌

최영희 • 태영호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범위 및 기금의 사용용도에는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함.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개별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금사용 및 사업내용에 매출채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추진을 돕고자 함(안

제67조제1항제18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17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매입·관리 및 회수 제74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매입·관리 및 회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
|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 | |
| 여 사용할 수 있다. | |
| 1. ~ 18. (생 략) | 1. ~ 18.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18의2.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보 |
| | 유한 매출채권의 매입·관리 |
| | <u>및 회수</u> |
| 19. ~ 26. (생 략) | 19. ~ 26. (현행과 같음)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74조(사업) ① 중소벤처기업진 | 제74조(사업) ① |
| 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 | |
| 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 |
|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 |
| 있다. | |
| 1. ~ 17. (생 략) | 1. ~ 17.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17의2.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보 |
| | 유한 매출채권의 매입·관리 |
| | <u>및 회수</u> |
| 18. ~ 23. (생 략) | 18. ~ 23. (현행과 같음)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